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8

제출년월일 : 2018. 11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가. 상위법령인 「의료급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.

나. 「지방재정법」제9조 및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명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안 명칭(제명) 변경

- 기존 : 「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」
- 변경 : 「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나. 「의료급여법」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)

- ‘의료급여법’, ‘의료급여기금’, ‘수급권자’, ‘기금담당관’ 등

다.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 인용법령 현행화 (안 제4조)

라.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(안 제8조)

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(2018. 11. 5. ~ 2018. 11. 25.) 결과, 제출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의견 없음

5) 조례・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평창군 조례 제 　　　호

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세입과 세출)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(이하 "회계"라 한다)는 의료급여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, 의료급여 수급권자(이하 "수급권자"라 한다)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.

제3조(회계공무원의 임명) ①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,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.

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.

제4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)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지방회계법」 제4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5조(수입)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, 금액,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.

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출)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,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.

제7조(준용)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제8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8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평창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원 부

제 호			년도
성 명			
주 소			
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소관		
상환금 내역	대지급금액 원	상환액 원	미납액 원
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			
납입금액	금 원		

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

__________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평 창 군 수 (인)

납 입 통 지 서

제 호			년도
성 명			
주 소			
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소관		
상환금 내역	대지급금액 원	상환액 원	미납액 원
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			
납입금액	금 원		

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

__________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평 창 군 수 (인)

영 수 필 통 지 서

제 호			년도
성 명			
주 소			
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소관		
상환금 내역	대지급금액 원	상환액 원	미납액 원
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			
납입금액	금 원		

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평 창 군 수 (인)

영 수 증

제 호			년도
성 명			
주 소			
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소관		
상환금 내역	대지급금액 원	상환액 원	미납액 원
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			
납입금액	금 원		

위 금액을 영수함.

년 월 일

분 임 수 입 원

[붙임 1]

관계법령 발췌

□ 의료급여법

제26조제4항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·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의료급여법 시행규칙

제28조제3항(기금의 관리 · 운용)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시 · 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(이하 "기금계정" 이라 한다)을 설정 · 운용하여야 한다.

제28조제9항(기금의 관리 · 운용)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· 운용에 관하여 법령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· 세출로서 일반세입 ·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 · 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 · 운용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·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·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지방재정법 부칙

제4조제2항(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)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, 비용수반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작 성 자	평창군 주민복지과장 이 용 섭
연 락 처	(033) 330-2150